

제 723 호
1979. 7.13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정삼천
편집 : 문화공보관 김인동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담당자	성인기	신부기	원부	유영기
				일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813 호 :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
규칙..... 3

◎ 고 시

제 314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6
제 315 호 : 도시계획시설(광장, 도로)결정, 변경및 지적승인..... 6
제 316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7
제 317 호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도로)지적승인..... 7
제 318 호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지적승인..... 8
제 319 호 : 도시계획시설(하수도)지적승인..... 8
제 320 호 : 취약구조개선사업을위한도시계획사업(일반의주택지
조성사업)시행허가..... 9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321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 허가.....	10
제 322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 도로) 일부변경지적승인.....	10

◎ 공 고

제 230 호 :	이전대상공장지정공고.....	11
제 232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자명의변경지적승인.....	13
제 23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공람공고.....	14
제 235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지정공고.....	15
제 236 호 :	도시계획사업 (공원시설) 실시계획에 따른서류공람및 의청취.....	16
제 237 호 :	토지수용협의공고.....	16
제 239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공람공고.....	17
제 241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지정공고.....	20
제 243 호 :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 BOX) 실시계획공람공고.....	20

규 칙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1979년7월13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813 호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부과대상자) (1)조례 제 3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73 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에 도달한 취득자를 말한다.

(2)토지구획 정리지구내의 토지에 있어서 환지처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에정지에 대한 권리자를 그 소유자로 본다.

제 7 조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3 호 및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부과대상지가 신설, 확장 또는 포장된 도로에 대하여 고지대나

지지대에 위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조례 제 8 조 제 2 항 제 1 호의 구역중 토지의 길이에 대하여는 별표 1

나. 조례 제 8 조 제 2 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구역중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소형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통로를 경유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고, 소형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한다.

3. 도로 확장의 경우 기존도로에 접한 토지의 일부가 확장된 도로에 다시 접한 때에는 종전토지 길이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감액한다. 다만, 종전도로에 접한 토지 길이가 확장된 도로에 접한 토지 길이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분은 감액에서 이를 제외한다.

4. 도로의 한편만을 확장한 경우에는 확장되지 않은 편은 부담금의 50%를 감액한다.

제 11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1 조 (이의 신청) (1)조례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은 그 서식이나 절차 또는 입증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구청장(출장소장)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 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이의 신청의 제기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 결정
- 2. 이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 결정
- 3. 이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개정결정

제 12 조 (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이의 신청 심의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준공된 공사는 종전의 예에 의하되 이의 신청사항에 대하여는 제 11조 및 제 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79.6.15 일 이후 이규칙 공포시까지 접수된 이의 신청사항중 이의 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된 것은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고 지	감 물	고 지	감 물
1 미터이상	20 %	2 미터이상	50 %
1.5 "	30 %		

(별표 2)

고 지	감 물	고 지	감 물
3 미터이상	30 %	7 미터이상	60 %
4 "	35 %	8 "	70 %
5 "	40 %	9 "	80 %
6 "	50 %	10 "	90 %

(별표 3)

고 지	감 물	고 지	감 물
3 미터	25 %	7 미터	50 %
4 "	30 %	8 "	60 %
5 "	35 %	9 "	70 %
6 "	40 %	10 "	80 %

(별표 4)

이 의 신 청 서

① 부 과 대 상 지			
② 주 소			
③ 성 명		④ 전화 번호	
⑤ 통 지 를 받 은 일			
⑥ 통 지 된 사 항 또는 처 분 내 용			
⑦ 청 구 취 지			
⑧ 불 복 의 사 유			
⑨ 기 타 (증빙) 서류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 1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
하여 벌지와 같이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⑨

구 청 장 귀 하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314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 1. 서울특별시 제 666 호 (78.12.18)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 2. 관계 도서는 종로구청, 은평출장소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게 한다.

1979.7.10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의위치 :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285의6 -종로구 신영동37의1
-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서북로] 건설공사
- 3. 사업규모 :
 도로 B=29m L=2,460m
 터널 B=9.65m X 2 L=620m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일가일 ~ 1981.12.30
- 6. 사용또는수용할재산의소재지 : 별첨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토지조서

◎ 서울특별시고시제 315 호

도시계획시설 (광장, 도로)
결정, 변경 및 지적승인

- 1. 건설부고시 제 236 호 (' 78.8.24) 및 제 232 호 (' 79.6.27) 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광장, 도로) 와 이에 관련한 우회도로 신설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와 동법 시행령 제 7 조의 2 및 건설부 고시제 41 호 (' 77.3.16) 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 및 지 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
-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 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7.12

서울특별시장

가. 광장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시 실 명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지적승인	반포제 3 광장	106	강남구 반포동 226 일대	5,945㎡	

나. 도로지적승인조서

등급	유번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광로		69	40-70m	2,300	서빙고동	동작동(81광장)	전구간지적승인
대로	2	29	30-40"	7,000	청담동(광41)	서초동(광19)	60m 구간확폭

다. 도로, 절정, 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번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대로	3	139	25	310	서빙고동(대3-26)	서빙고동(공영사)	
"	중로	1	207	20	410	서빙고동(광-69)	서빙고동(중1-135)	
기정	"	1	135	20	8,900	한강대교	해당동	
변경	"	1	"	20-35	"	"	"	동작대교부근500m 구간확폭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1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232 호 ('79.6.27) 로 재결정된바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조서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7.12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유번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지적고시	광로		17	40m	4,250m	도봉구 수유동	도봉동시계	820m 구간
"	대로	2	39	40m	4,100m	강서구 가양동	강서구 외발산동	830m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17 호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1 호 및

제 273 호 (79.6.25) 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도로) 를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
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
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7.12
서울특별시

가. 여객자동차 정류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영등포구 시흥동산 84-16	3,300㎡	옥성운수(주)

나. 도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	90	영등포동 4가 156	영등포동 4가 123	폐지및도면생략
변경	"	"	"	"	"	"	

◎서울특별시고시제 318 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지적승인

1. 마포구청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3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호('77.3.16)

의 권한 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
인다.

1979.7.13
서울특별시

가. 지적승인내역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신설	여객자동차정류장	마포구하중동 24번지 일대	1,039㎡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19 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지적승인

1. 마포구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호(77.3.16)의 권한
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7.13

서울특별시장

가. 지적승인내역

구분	시설명	목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하수도	1.5	225	성산동	성산동	
"	"	1.5	6	"	"	
"	"	5	140	망원동	망원동	
"	"	7	580	망원동 414 - 92	망원동 418 - 22	
"	"	3	147	공덕동 240 - 16	공덕동 249 - 25	
"	"	6	60	" 253 - 18	" 253 - 26	
"	"	0.5	1,095	연남동 369 - 6	연남동 480 - 1	
"	"	3.0	252	합정동 357 - 5	합정동 354 - 1	
"	"	4.0	840	성산동 271 - 36	망원동 438 - 16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20 호

"취락구조개선사업을위한도시계획
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
사업)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8호(79.
4.2)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1호
(79.6.11)로 결정 및 지적승인
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도
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에 (77.3.16) 의거

이를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79.7.13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시행지 : 강서구신정동 765 의
103 필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취락구조개선사
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 3. 사업의규모및면적 : 66,055 m²
(19,981.5 평))
- 4. 사업의시행자주소·성명 : 강서구신
정동781-14 장 명 환
-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가. 착공 : 허가시행일로부터 7 일 이내
나. 준공 : 79.8.30
- 6. 사용할토지의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권리명세 : (별첨조사참조)
(별첨조서생략)
- 7. 시설조서 : (별첨조사 참조)
(별첨조서 생략)
- 8. 허가내용 : (별첨허가 도서)
(별첨허가도서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21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 1. 서울시 공고 제 235 호 (72.11.21) 로 환지확정처분한 (시장)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를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7.16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성동구화양동 10-1
-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장)
- 3. 사업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성동구화양동 10-1 화양제일시장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병 식
- 4. 사업기간 : 79.7. - 79.10.10
- 5. 사업의규모 : 1,506 평
-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명세서 : 별첨
(생략)
- 7. 위치및계획평면도 : 별첨 (생략)
- 8. 공사설계도면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22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 도로) 일
부변경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7 호 (79.5.19) 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위임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7.16

서울특별시장

가. 학교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가정	영파여자고등학교	강남구성내동 102-4 밑대	15,372 (4,650 평)	
변경	"	"	23,769 (7,190 평)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가정	소로	2	8	110	성내동 327-8	성내동 326-4	폐지
년경	"	2	8	90	" 327-8	" 327-9	연장축조
신설	"	1	10	154	" 328-6	" 321-26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30 호

이전대상공장지정공고

공업배치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3 조의 규정에 의거 이전대상 공장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한다.

1979.7.10

서울특별시장

1. 이전대상공장의 범위
반월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중,

- 가. 도시계획법상 비공업지역에 소재한 공장으로서,
나. 공업배치법시행령 제 23 조의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공장
2. 대상공장 : 명단 별지첨부 (총 50개 공장)
 3. 이전지역 : 반월공업단지
 4. 이전시한 : 1980.12.30 까지
 5. 지원사항
가. 이전자금지원 (중소기업특별처리 자금)
나. 세제 지원 :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소정기간 면제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업과에 문의바람.

이 전 대 상 공 장 명 단

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업 종
1	신우직물공업사	강남이 178-1	유 병 진	섬 유
2	대양모직공업(주)	영등포신도림 738-1	이 병 우	"
3	명복테이프공업사	성북하월곡 49	김 순 학	"
4	삼일부채포	강남명일 179	민 경 덕	"
5	삼정산업사	강남신사동 246-1	장 성 수	"
6	우진제관공업사	강남성내동 29	박 병 주	"
7	성동금속공업(주)	도봉방학동 174-2	고 철	"
8	이화철탑제작소	서대문응암동 96-18	김 옥 산	기계
9	동양스텐	" 연의동 218-15	김 유 복	"
10	오로라전기(주)	마포구현석동 144	최 창 원	"
11	공병우테레타이프공업(주)	중구예관동 126-1	이 종 호	"
12	한국도오라전기공업사	서대문미근동 23-2	김 남 기	"
13	제일금속공업사	용산문배동 7-10	송 재 균	"
14	광진기계공업사	성동마장동 775-2	권 영 직	"
15	보성물산(주)	영등포구로 642-40	조 관 행	"
16	(주)영선전기	성동성수동 2가 5-11	장 철 오	"
17	대한모타공업사	용산문배동 4-1	한 재 석	"
18	수영전기기업(주)	성동구의 202-16	최 근 순	"
19	성광조명기업사	영등포신정동 73-1	진 종 화	"
20	명화공업(주)	용산원효로 2가 92-10	문 채 수	"
21	삼선공업(주)	영등포시흥동 455	이 창 봉	"
22	명광공업사	용산원효로 4가 114	김 명 준	"
23	대한주방기기(주)	관악신림동 19-18	박 동 술	"
24	이 공 사	강서신정동 201	이 상 희	"
25	조일기계공업(주)	강서신정동 614-1	지 창 현	"
26	우창기계공업(주)	성동마장동 520-18	이 만 우	"
27	동일전기(주)	마포용강동 146-3	오 재 근	"
28	해도공업사	강남성내동 256-6	김 태 식	"

번호	업	명	소	지	대표자	업종
29	삼영케이블(주)		성동성수1가	483-1	천진영	기계
30	대동상공업(주)		용산원효2가	66	이남식	#
31	국제산업기계(주)		관악신림동	499	김이배	#
32	영화산업정기제작		용산문배동	11-3	공호영	#
33	대선화학(주)		영등포신길동	107-2	이선용	#
34	태화테프론공업사		용산원효로2가	3-12	윤경호	#
35	홍일금속공업사		성동성수2가	57-33	최원국	#
36	신성금속	#	도봉수유2동	273-79	오세백	#
37	대정공철		성북상월곡동	57-1	홍이표	#
38	청구공업(주)		용산문배동	7-6	이재현	#
39	태가통상		강서공항동	70-6	권쌍택	#
40	성일화학공업(주)		강서공항동	406-2	윤창덕	화학
41	동남갈포공업(주)		서대문연희동	351-3	서병식	섬유
42	미창산업사		# 북가좌동	20-16	이상구	#
43	동진산업사		강서신정동	170-2	정기중	화학
44	대원씨드공업(주)		영등포오류동	77	허수열	기계
45	협신정밀(주)		성동상왕십리동	12-16	문의상	#
46	고려이화(주)		동대문면목동	1049-196	김락천	#
47	한국보이라		관악신대방동	680	이명준	#
48	대진금속공업사		# 노량진동	84-34	이윤희	#
49	대하산업사		성동풍익동	18	변학수	섬유
50	금강디자인센터		마포서교동	374-10	김종익	#

◎ 서울특별시공고제 232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자
명의변경지정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12 호 (78. 9.30) 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

(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명의변경 지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7.11

서울특별시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강서구신정동 729번지의 24 필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급육여자중, 고등학교
3. 사업의규모및면적 : 32,842㎡ (9,935평)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구사업시행자 : 서울시종로구관철동 11-24 학교법인금속학원 이사장 백금옥
 신사업시행자 : 서울시종로구관철동 11-24 학교법인금속학원 이사장 이성원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1979.4
 나. 준공예정일 : 1979.12.31
6. 위치도 : 별첨
 별첨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234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 호 (79.1.10) 및 동고시 제 32 호 (79.1.26)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남구 개포동 산 81 번지일대 학교 시행사업 구간내 저촉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

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본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9.7.11

서울특별시시장

공람개요

-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개포동산 84 번지 일대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 다. 사업의규모 (면적) : 17,442
-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 가 50 번지 삼성빌딩 서울일본인회 회장 중장
-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에정일 : 1979.7
 2) 준공예정일 : 1981.5
-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아.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 자.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56-8972)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강남구개포동	산 84	임	11,229㎡	중구을지로 1 가 50	서울일본회		
"	산 84-1	"	1,258 #	강남구개포동 169	차 중 수	종로구청동 76-8	한 북
"	430	전	393 #	중구을지로 1 가 50	서울일본회		
"	431	"	1,417 #	"	"		
"	429	"	1,506 #	성북구성북동 14-16	김 현 순		
"	429-2	"	267 #	"	"		
"	429-3	"	762 #	"	"		
"	428	"	171 #	서대문구불광동 279-4	정 준 구		
"	432-5	"	223 #	강남구논현동 217-45	전 광 칠		
"	432-11	"	58 #	"	"		
"	432-7	"	76 #	"	"		
"	432-13	"	82 #	"	"		
	계		17,442㎡				

◎ 서울특별시공고제 235 호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
환지에정지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경인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일부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6 호 (79.6.19)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공고 한바, 동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으므로 공람공고 내용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

계획 일부 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 정지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2. 환지에정지 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서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로 송부합니다.

1979.7.

서울특별시장

(환지계획 변경내역)

- 1. 사업명 : 경인토지 구획정리 사업
- 2. 변경위치 : 강서구신정동 442 번지의 13 필지
- 3. 변경면적 : 2,578.4 평

◎ 서울특별시공고제 236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 실시 계획에따른서류공람및의견청취

- 1. 건설부 고시 제 138 호 ('77.7.9) 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바 있는 관악구 봉천동 산 174-12 에 대하여 공원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 부터 14 일 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함.
-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녹지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함.

1979.7.13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 1. 사업시행의위치 : 서울특별시관악구 봉천동산 174-12
-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운동장
명칭 : 관악산 운동장 조성공사
- 3. 사업규모 : 12,980 평
- 4. 사업시행자 : 서울시서대문구응암동 226-13

-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 별첨조서
- 6. 착수및준공예정일 : 1979.7-1980.3.31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 8. 위치및계획평면도 : 별첨
- 9. 공사개략설계도서 : 별첨

◎ 서울특별시공고제 237 호

토지수용협의공고

- 1. 건설부 고시 제 64 호 (79.2.24) 로 국민주택 사업이 승인된 시내 강남구 암사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부지로 확정된 대지중 지금까지 매수협의가 미필된 토지에 대하여,
- 2. 토지수용법 제 25 조 1 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수용에 관한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한바 있으나 그간 주소변경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관계자를 위하여 공고하오니,
- 3. 소유자께서는 국민주택 건설사업에 적극 협조하시는 뜻에서 수용에 관한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9.7.16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서울시 암사지구 국민주택 건설사업
 2. 사업기간 : '79.3 ~ '79.12.30

3.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4. 공고(협의)기간 : '79.7.16 ~ '79.7.26

5. 수용할 토지

소재지	지목	필지	면적	지번
강남구암사동	임야	9	5,120	암사동산 44-2, 43-2, 4, 44-3, 4, 5, 49-3, 2, 52
"	답	2	1,021	암사동 352, 352-1
"	대	1	1	암사동 402-5
계		12	6,142	

6. 기타사항

1)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천호출장소 주택과 (48-2286)에 비치하고 있으며,
 2) 공고기간중에 불응등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재결신청으로 강제수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주차장)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3. 본 공고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서울특별시공고제 239 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 공 략 공 고

1979.7.13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2 호 ('77.12.21) 및 동고시 제 156 호 ('79.4.18)로 지적승인된 강남구 양재동 557번지 일대 주차장 시행 사업구간내 저촉 편입되

공 략 개 요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양재동 557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p>사업 (주차장) 시행 다. 사업의 규모 (면적) : 25,567 (8,452 평)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9번지 건양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순원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1979년 7월 일 2) 준공예정일 : 1980년 4월 31일</p>	<p>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아.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차.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56-8972) 로 문의바람.</p>
---	--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원지적	현입지적	주소	성명
강남구양재동	536-2	전	256	256	강남구압구정동현대 APT 22동 402	오 세 욱
"	536-12	"	71	71	부산진구양정동 62-8	이봉현의 2인
"	536-3	"	693	504	"	"
"	536-13	"	51	51	강남구압구정동현대 APT 22동 402호	오 세 욱
"	536-5	"	36	36	압구정동 1단지 자의 1	김 동 규
"	536-11	"	107	71	부산시동구대창동 3가 61	천일여객(주)
"	536-6	"	42	42	압구정동 자의 1호	김 동 규
"	536-10	"	530	259	부산시동구대창동 3가 61	천일여객(주)
"	536-1	"	641	641	압구정동 1단지 자의 1	김 동 규
"	536-4	"	453	311	성동구군자동 104-6	박 홍 식
"	536-7	"	730	368	중구신당동 404-25	김 동 문
"	557	"	515	515	부산시동구법일동 252-767 남대문로 2가 10-1	천 일 화 물 신 탁 은행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원지적	전입지적	주소	성명
강남구양재동	557-1	전	423	253	부산시등구벌일동 252-767	천일화물
"	564	묘	828	828	압구정동현대아파트22동402	오세욱
"	564-1	"	56	56	부산진구양정동 62-8	이봉현외 2인
"	566	"	860	320	압구정동 1단지 자의 1	김동규
"	566-1	"	76	71	부산시중구대창동 3가 61	천일여객(주)
"	558	"	466	466	마포구창천동 13-25	박찬홍
"	560	"	166	166	압구정동 1단지 자의 1	김동규
"	561	"	96	96	광주시등구대인동 21	광주고속(주)
"	463-2	임야	3,554	1,406	강남구학동 87-2	이인성
"					양재동 463-2 (가동기)	문임순
"	534	전	1,138	163	서대문구역촌동 40-37	김유연
"	535	"	855	30	압구정동현대 APT 22동 402	오세욱
"	556-2	답	553	204	강남구압구정동현대 APT 22동 402	"
"	556-3	"				
"	462	묘	1,434	684	중구신당동 251-125	김대진의 1인
"	533	전	640	174	성동구군자동 104-6	박홍식
"	565	묘	47	47	국유지	관리청제부부
"	563	"	207	207	'75.10.22	미등기
"	559	"	58	58	"	"
"	556-1	답	83	26		박두병외 2인
"	556-4	전	278	20	동교동 184-6	권순형
"	562	묘	43	43	'75.10.22	미등기
"	530	도		9		국유지
			계	8,452	평	

◎서울특별시 공고제 241 호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 지정 공고

1. 서울특별시 김포 및 경인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일부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 197 호 ('79.6.11) 로 토지소유
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 공
고한바, 동 기간내에 의견서 제출
이 없으므로, 공람공고 내용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일부 변
경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
에 의하여 환지에정지 지정하였기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 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와 강서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
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게 보인다.
3.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
도 송부한다.

1979.7

서울특별시장

(환지계획 변경내역)

1. 사업명 : 김포 및 경인토지 구획

정리지구

2. 변경위치 : 강서구목동 114-1 의 5 필
3. 변경도서 : 생략 (도시정비국 구획
정리과 비치)
4. 변경면적 : 381.7 평

◎서울특별시 공고제 243 호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 BOX)
실시 계획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8 호
('79.4.24) 로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8 호
('79.6.8) 로 지적 고시된 강
남구 봉납동 155-26 에서 봉납동 237-4 번
지간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 BOX) 공사 구
간내에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공고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공고로 갈음함.
3. 관계도서는 천호출장소 시민봉사
실 및 토목과와 도시정비과에 비
치하고 토지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7.16

서울특별시장

<p style="text-align: center;">공 략 개 요</p> <p>1. 사업장 위치 : 강남구 풍납동 155-26 ~ 풍납동 237-4</p> <p>2. 사업 종류 및 명칭 : 풍납동 157 번지 하수 암거공사</p> <p>3. 사업규모 : 암거 (BOX) (2.6 × 2 × 2 런) L = 336 미터</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천호출장</p>	<p style="text-align: center;">소 장</p> <p>5. 사업 착·준공 예정일 가. 착 공 일 : '79.3.19 나. 준공예정일 : '79.7.16</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p>
--	---

토 지 조 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강남구 성내동	98-15	대	479	동빙교동 68-5	박 석 길
"	99-9	전	481	성내동 108-4	영 파 학 원
"	328-9	잡	61	상 동	
강남구 풍납동	157-2	전	105	포함시두호동 273-2	황 봉 익
"	237-8	전	215	풍납동 225	이 찬 주
"	338-22	대	93	상 동	
"	337-3	전	239	성내동 48-4	안병호외 2인
"	237-10	전	333	압구정동 369 현대아파트 23 동 801	최 경 현
"	237-4	잡	1,072	풍납동 225	이 찬 주
계	9 필지		3,078		